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86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임호선·이학영·허 영

김영진 · 정일영 · 전진숙

이원택 · 위성락 · 서왕진

송재봉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5조(약물의 영향을 받는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는 과로,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 자의 동의를 받아 모발·소변·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5조"를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항제4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4항 중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2.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안

제45조(약물의 영향을 받는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 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 에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2조에 따른 마약. 대 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 는 과로, 질병과 그 밖의 사유 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모발 ·소변·혈액 채취 등의 방법 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 정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 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2)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가. 제44조제1항・제2항, <u>제4</u>
 <u>5조</u> 또는 제46조를 위반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 라. (생 략) 4. ~ 10. (생 략)

③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
3
가
ス 레 1 하나 기 의 하나
<u> 조제1항 • 제2항</u>
나. ~ 라. (현행과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①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	
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	
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	
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	
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	

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1. ~ 3의2. (생략)
- 4. <u>제45조를</u>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 23. (생략)

② ~ ④ (생 략)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략)
 -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u><신 설></u>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1항을
5.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u>.</u>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
<u>1. 계504계13년 기원의의 구</u>

<신 설>

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는 사람